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
----------	------

발의년월일 : 2011. 11. 1.  
발 의 자 : 전준호, 나정숙, 김철진 (3인)

### □ 제정이유

- IMF 이후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유동화 되면서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노동자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사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80% 이상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그 중 200만이 넘는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보장,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파업과 농성이 이루어져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 이와 관련,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전국 최대의 중소 영세기업 밀집지역(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인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우리시의 노동, 사회단체에서도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우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 등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 ②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라 함은 상시노동자 100인 미만의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관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2. 상담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사업
4. 고용촉진사업 :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생활지원사업 :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질 생활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6. 사회협약사업 : 노사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준수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협약사업
7. 교육사업 :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사업 : 동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9.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 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장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해당 관련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2명 이상은 해당 당사자들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186
----------	------

제안년월일 : 2011. 11. 30.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 1. 수 정 이 유

- 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위탁기간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내용 보완코자 수정함.

## 2. 주 요 글 자

- 센터운영의 위탁법인 및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안 제5조).
- 수탁자의 의무에서 타인에게 권리 양도, 전대하지 못하는 규정 신설하고(안 제6조)
- 운영위원회 구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1항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센터 운영에 필요할 경우”로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2항으로 조항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를 제3항으로 신설하여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2항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항의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를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로 하고 제3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운영위원회)의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2항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장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해당 관련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2명 이상은 해당 당사자들로 구성한다”를 제3항으로 신설하여 “센터장”을 “센터의 장”, “업무담당 국장”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업무담당국장”, “해당 당사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다. 제3항을 제4항으로 신설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센터의 설치)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② .....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9.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 9.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출연 및 투자 기관을 포함한 산하 기관, 시의 민간위탁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10. 그 밖에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할 때 그 절차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원 안	수정안
<p>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제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p>	<p>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삭제)</p>
<p><b>제10조 (운영위원회)</b>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2. (생략)</p> <p>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센터장과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해당관련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2명 이상은 해당 당사자들로 구성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p>	<p><b>제10조 (운영위원회)</b>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2. (원안과 동일)</p> <p>3. 그 밖에 .....</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의 장과 비정규직 노동자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2명 이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p>

원 안	수정안
<p>제11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수당과 여비</u>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 (위원의 수당) .....  .....  ..... 범위에서 .....  .....  ..... 수당 등을 .....  .....</p>
<p>제12조 (운영규정)</p>	<p>제12조 (<u>시행규칙</u>)</p>